

제 13 장

기업인의 일시입국

제 13.1 조

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- 가. **기업인**이라 함은 상품 무역,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공민을 말한다.
- 나. **기업인 방문자**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다음의 공민을 말한다.
 - (1) 서비스 판매자,
 - (2) 단기 서비스 공급자,
 - (3) GATS상의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·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, 또는
 - (4)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
- 다. **서비스 판매자**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대표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그 일방 당사국의 공민을 말하며, 그러한 대표는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라. **단기 서비스 공급자**라 함은 다음의 인을 말한다.
 - (1) 타방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 또는 투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으로서 타방 당사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
 - (2) 일시입국 허가신청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이었던 자
 - (3) GATS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·임원 또는 전문가, 그리고
 - (4) 다음의 서비스분야에서 자신들을 고용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

업을 대신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

- 1) 전문직 서비스
- 2)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
- 3) 통신 서비스
- 4) 금융 서비스, 그리고
- 5) 관광안내인 및 통역사, 그리고

(5)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(4)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마. 일시입국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13.2 조 일반 원칙

1. 제1.2조에 추가하여,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적 무역관계,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 그리고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.
2. 이 장은 국적 또는 시민권,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 13.3 조 일반 의무

1. 각 당사국은 제13.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며, 특히 이 협정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회피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.
2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정의 및 해석을 발전시키고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, 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러한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사증 또는 고용을 인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
제 13.4 조 일시입국의 허용

1. 이 장에 따라 그리고 부속서 13A 및 부록 13A.1의 규정을 조건으로, 각 당사국은 공중보건 및 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.

2.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,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- 가.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, 또는
- 나.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자의 고용

3.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 서류의 발급을 제2항에 따라 거절할 때에는, 그 당사국은,

- 가. 그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,
- 나.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 13.5 조 정보의 제공

제19.2조에 추가하여, 각 당사국은,

- 가.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. 그리고
- 나.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은,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 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동 자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한다.

제 13.6 조 분쟁 해결

- 1.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,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제13.2조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제20.6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.
 - 가. 그 사안이 관행의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, 그리고
 - 나.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소진한 경우

- 2.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월 이내에 사안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, 제1항나호에 규정된 구제조치가 소진된 것으로 본다.

제 13.7 조 다른 장과의 관계

이 장, 제1장(총칙)·제2장(일반정의)·제20장(분쟁 해결)·제22장(행정 및 최종조항)·제19.2조·제19.3조 및 제19.4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입국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.